

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」 제15조의2제8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공무원 가점평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평정기준) ① 가점평정 항목은 원칙적으로 해당 계급에서 근무·취득 또는 이수한 경우에 한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임용예정계급에서 취득한 것으로 본다.

1. 신규임용예정자가 신임교육과정 중에 취득한 전산자격, 직무자격, 언어능력, 학위
2.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명부에 등재된 기간 중 취득한 전산자격, 직무자격, 언어능력, 학위

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른 승진후보자명부 등재시점은 심사의 경우 승진심사위원회의 의결일자, 시험의 경우 합격자 발표일자로 본다.

제3조(전산자격 가점평정) ①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워드프로세서 및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한다.

② 자격등급별 가점평정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.

제4조(직무자격 가점평정) 가점평정 대상 직무관련 자격증 및 가점평정 점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
제5조(언어능력 가점평정) ① 언어능력 가점평정은 국어·영어·프랑스어·독일어·스페인어·일본어·중국어·러시아어를 대상으로 한

다.

② 언어능력에 대한 가점평정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.

제6조(학위취득 가점평정) ① 학위를 취득한 자에 대한 가점평정은 국·내외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한한다. 다만, 국외에서 취득한 학위는 그 나라 대사관 등 공관에서 증명서 사본이나 공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학위취득 가점평정은 전문학사학위는 0.1점, 학사학위는 0.2점, 석사학위는 0.3점, 박사학위는 0.5점으로 각각 평정한다. 다만, 전문학사학위 및 학사학위 가점평정은 소방경 이하에 한한다.

제7조(격무·기피부서 가점평정) ① 임용권자는 격무·기피부서를 지정하고, 해당 계급에서 격무·기피부서에 근무한 날부터 1개월마다 0.05점 이내에서 가점을 평정할 수 있다.

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가점을 평정하기 위해 평정대상 기관·부서·직무 등과 월별 평정점수를 사전에 정하여 공지하여야 한다.

③ 가점 대상기간의 산정기준은 「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」 제5조에 규정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계산방법에 따르되, 모든 휴직기간과 30일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휴가기간은 제외한다.

④ 제1항에 따른 가점은 정기평정기준일 현재까지의 근무경력에 대하여 경력 월수 단위로 계산하여 평정하되,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.

제8조(우수실적 가점평정) ① 소방관련 전국 및 시·도 단위 대회 또는

평가결과 우수한 성적을 얻은 자에 대해서는 가점을 평정할 수 있다. 다만, 부여요건과 기준을 소방청장 또는 시·도지사가 사전에 정하여 공지한 경우에 한하며,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인사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가점을 평정함에 있어 동일한 내용으로 시·도 및 전국 단위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경우에는 그중 해당 소방공무원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점 평정한다.

③ 「공무원 제안규정」에 따라 채택된 제안 중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을 부여하기 곤란한 제안자에 대하여는 우수실적 가점을 평정할 수 있다.

④ 우수실적 가점평정은 별표 5의 기준에 따른다.

제9조(인사고료 가점평정 방법) ① 시행규칙 제15조의2제6항에 따른 가

점은 **소방청**(소속기관 포함), 중앙부처에 **임용(파견 포함)되어** 근무한 사람이 해당 계급에서 다시 시·도로 복귀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가점은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1개월 마다 0.125점씩 가점 평정한다.

③ 가점 대상기간의 산정기준은 「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」 제5조에 규정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계산방법에 따르되, 모든 휴직기간은 제외한다.

④ 제1항에 따른 가점은 정기평정기준일 현재까지의 근무경력에 대하여 경력 월수 단위로 계산하여 평정하되,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

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.

제10조(평정방법) ① 전산자격, 직무자격, 언어능력, 학위취득(이하 "전산자격 등"이라 한다.) 가점을 평정함에 있어 동일 또는 동종의 가점 대상이 아닌 한 각각에 대하여 평정하며, 「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」 제15조제5항에 따라 전문능력성적으로 평정한 자격증에 대해서는 다시 가점 평정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배점을 달리하는 동일 또는 동종의 전산자격 등은 그 중 유리한 것 1개에 대해서만 평정하여야 한다.

③ 전산자격 등으로 가점을 받은 자는 승진하여 하위계급에서 가점을 받은 전산자격 등과 동일 또는 하위등급의 전산자격 등으로 가점을 받을 수 없다.

④ 신규채용 시 전산자격 등으로 가점을 받은 자는 가점을 받은 전산자격 등과 동일 또는 하위등급의 전산자격 등으로 가점을 받을 수 없다.

⑤ 가점의 총 합계점수는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예규는 2024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유효기간) 이 예규 시행 전 취득한 직무자격 가점이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폐지 또는 축소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.

[별표2]

직무자격 가산점

자 격 의 종 류	배 점
○ 소방기술사, 위험물기능장, 자동차정비기능장, 정보통신기술사 ○ 1급 ~ 4급 항해사 · 기관사 · 운항사 ○ 비행기 또는 회전익항공기 운송용조종사 · 사업용조종사 · 항공정비사 · 항공공장정비사 ○ 응급구조사1급, 간호사, 화재조사관, 소방시설관리사, 소방안전교육사, 전문인명구조사, 건축사 ○ 「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」 제4조에 따른 초급·중급·고급·전략 현장지휘관	0.5
○ 소방설비기사(기계), 소방설비기사(전기), 자동차정비기사, 화재감식평가기사, 정보처리기사, 무선설비기사, 정보통신기사 ○ 5급 또는 6급 항해사 · 기관사 ○ 응급구조사 2급, 화재대응능력평가 1급, 인명구조사 1급, 소방사다리차운용사 ○ TS한국교통안전공단 초경량비행장치(무인 비행기, 무인 헬리콥터, 무인 멀티콥터, 무인 비행선) 실기평가조종자 또는 지도조종자 ○ 화학사고 대응능력 1급, 구급전문교육사 1급, 선임 조종교육증명	0.3
○ 소방설비산업기사(기계), 소방설비산업기사(전기), 위험물산업기사, 위험물기능사, 자동차정비산업기사, 화재감식평가산업기사, 정보처리산업기사, 정보처리기능사, 무선설비산업기사, 무선설비기능사, 정보통신산업기사 ○ 소형선박조종사, 잠수산업기사, 잠수기능사 ○ 화재대응능력평가 2급, 인명구조사 2급, 제1종 대형운전면허 ○ TS한국교통안전공단 초경량비행장치(무인 비행기, 무인 헬리콥터, 무인 멀티콥터, 무인 비행선) 조종자(1종, 2종) ○ 화학사고 대응능력 2급, 구급전문교육사 2급, 초급 조종교육증명	0.2